

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[별표 1] <개정 2026. 2. 19.>

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(제2조제1항 관련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7,009 |
| 교육공무원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,843 |
| 대학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,102 |
| 총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6     |
|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,191 |
| 조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875  |
| 중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1    |
| 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     |
| 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     |
|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67    |
|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28    |
| 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     |
| 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     |
|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96    |
|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    |
| 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|
| 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|
|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 |
| 특수학교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85    |
| 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|
| 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|
| 교사(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) | 369    |
|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7     |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보건교사              | 41    |
| 영양교사              | 31    |
| 사서교사              | 12    |
| 전문상담교사            | 3     |
| 교육전문직 계           | 21    |
| 교육연구관             | 7     |
| 교육연구사             | 14    |
| 별정직 계             | 26    |
|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| 17    |
|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| 9     |
| 일반직 계             | 6,140 |
| 3급 또는 4급 이하       | 6,058 |
| 전문경력관             | 82    |